



# 환 · 경 · 관 · 련 · 질 · 의 · 응 · 답

## 사업장일반폐기물로 구분 가능

Q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1) 지정 폐기물의 종류중 8항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비페닐 함유폐기물 (절연유)이 가. 액체상태의 것중 함유량이 2ppm 미만이면

질의 1) 지정폐기물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지요?

질의 2) 일반 사업장 폐기물로 처리하면 되는지요?

A

폐절연유는 성분분석 결과 PCB가 지정폐기물 기준 이내로 검출되더라도 기름성분을 5% 이상 함유하고 있는 경우 지정폐기물인 폐유로 분류됩니다.

## 배출시설 위탁폐수의 방지시설인입시 가동개시여부

Q

당사는 기존 물리화학적처리시설을 가동중에 있습니다.

배출시설의 일부 배출점(A)이 지리적으로 배관설치가 곤란한 관계로 위탁처리하는 것으로 관할의 허가를 받아 위탁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금회 본 배출점(A)의 사업장내 이전으로 방지시설인입이 가능하게 됨에 기존 처리장에 유입처리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가동개시신고대상인지요?

A

변경신고에 의한 가동개시신고는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폐수처리방법을 바꾸는 경우, 새로운 오염물질이 발생되어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경우 등은 변경신고에 따른 가동개시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우레탄의 처리

Q

액상우레탄을 이용하여 레이저프린터현상기용으로 우레탄 시트 제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입니다. 액상우레탄을 사용후 남은 고철드럼의 처리방법을 문의합니다.

드럼안에 남아있는 액상우레탄은 굳어있습니다. 이경우 드럼째 폐합성수지로 하여 소각처리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이경우 폐기물종류와 처리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A

질의하신 우레탄의 성분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은 곤란하나, 우레탄이 유독물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유독물이 묻어있는 드럼용기도 지정폐기물 중 폐유독물에 해당되며, 유독물에 해당되지 않는 우레탄인 경우라면 드럼용기 자체의 종류(폐합성수지, 고철 등)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참고로, 유독물의 경우 원래농도의 유독물을 그대로 폐기하는 경우 지정폐기물 중 폐유독물에 해당되나, 유독물을 공정 중에 투입하는 등으로 타 물질과 혼합되어 농도가 다르게 배출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지정폐기물의 종류(예: 폐산, 폐유기용제)에 따라 분류됨을 알려드립니다.

## 악취행정처분

Q

저는 환경안전팀에 근무하는 환경담당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구청에서 악취배출시설 점검을 나와서 시료채취를 한 상황인데, 배출허용기준 초과시 행정처분(개선명령)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회사 굴뚝현황: 악취배출구의 높이는 4m이며, 시료를 채취한 곳의 높이는 3m되는 측정공입니다.

A

(1) 악취방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안의 사업장에서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한 악취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복합악취, 지정악취물질)가 동법 시행규칙 별표3의 규정에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개선명령)을 받게 되며, 동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7의 규정에 의거 사용중지명령을 받게 됩니다.

(2) (1)번의 경우와 달리 악취관리지역밖의 사업장에서 설치한 악취배출시설에서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개선권고 → 조치명령 → 과태료 및 조치명령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3) 참고로, 동법 시행규칙 별표3의 규정에 의거 악취배출허용기준 측정은 복합악취를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행정기관에서 악취원인물질 확인 등 필요한 경우 지정악취물질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동 별표3 비고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거 복합악취의 경우에는 사업장의 악취배출시설 설치여건에 따라 부지경계선 또는 일정한 배출구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측정하며, 지정악취물질은 부지경계선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경우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 공동배출협회 가입문의

Q

당사는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사업장폐기물의 공동처리 등)에 1항 자동차관리법 132조의 1항 오일

의 보충·교환 2항 에어크리너엘리먼트 및 필터류의 교환을 하여도 자동차관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건설교통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오일교환 등에 따른 폐기물 발생으로 당사는 배출자가 되는 것인데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공동배출협회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합니다. 업으로 하여야만 공동배출협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것이지요? 만약에 가입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당사는 폐기물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의 경우라 하더라도 수탁받은 폐기물 외에 해당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지정폐기물이 발생되는 경우라면 지정폐기물 배출자에 해당되며, 「폐기물관리법」제2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지정폐기물 배출자 2 이상은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공동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공동으로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습니다.

### 감염성폐기물 대상 여부 확인



당사는 원료의약품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질의 1) 연구소가 아닌 실험실만 존재할 경우 감염성폐기물 배출기관 해당여부?

질의 2) 실험실에서 발생하는미생물 배지 및 기타 커버그라스류가 감염성 폐기물 대상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원료의약품 제조회사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2의 제9호의 학술연구 또는 제품의 제조·발명에 관한 시험·연구를 하는 연구소(의학·치과의학·한의학·약학 및 수의학에 관한 연구소에 한함)에 해당되므로, 시험·검사 등에 사용한 후 발생하는 폐배지, 슬라이드·커버그라스 등은 감염성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악취배출시설 신고(변경) 대상 여부



악취배출시설 신고(변경) 대상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고자 하니 성실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2 “악취배출시설의 금속·금속제품·기계·장비·가구 및 그 밖의 제품 등의 표면처리시설” 중 “금속 표면처리용 건조공정을 포함하는 시설”을 증설(기존 설치신고된 시설외 별개의 시설로 새로이 추가설치)하는 경우

질의 1) 악취배출시설의 신규설치로 보아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거 설치신고 대상인지?

질의 2)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3 제2호에 따른 시설규모의 기준에서 정하는 공정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 대상인지?

A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동법 시행규칙 별표2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악취배출 시설규모의 기준에서 정하는 공정(시설)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와 같이 기존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한 “금속· 금속제품· 기계· 장비· 가구 및 그 밖의 제품 등의 표면처리시설”에서 새로이 악취배출시설 규모에 해당되는 시설 또는 공정(금속표면처리용 건조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사항에 해당됩니다.

##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련

Q

실험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허용농도 미만으로 배출되어, 배출시설을 신고할 필요도 없고 방지시설을 설치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배출허용농도 미만) 폐수를 처리없이 방류한다면 [수질환경보전법 15조 배출 등의 금지]에 위반되지 않을까요? 이 조항에서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농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A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에서 규정한 일정량 이상 폐수가 발생하는 경우(특정수질유해물질을 포함하는 경우 0.01m<sup>3</sup> 이상/1일) 허가를 받아 적정처리하여 방류하여야 합니다. 다만, 폐수가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가 가능합니다.

## 대기방지시설 해당여부

Q

도장부스를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물론 방지시설도 설치해야 되구요. 도장부스와 방지시설(흡착탑)을 일체형으로 제작하였을 경우  
도장부스,프리필터, 흡착탑, 송풍기를 한 몸체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제작할 경우 도장부스와 일체형인 흡착탑(+송풍기)이 방지시설에 해당되는지요?

A

일체형 도장시설에 대한 시설구조, 설계도면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도장부스와 방지시설(흡착탑)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경우, 도장부스는 대기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며, 흡착탑은 방지시설(흡착에 의한 시설)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송풍기는 오염물질을 이송하기 위한 방지시설의 부대시설로서 방지시설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방지시설의 설치나 변경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자가 설계·시공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동법 시행규칙 제26조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외의 자가 설계·시공할 수 있는 방지시설 및 제27조 자가방지시설의 설계·시공하는 사업자 제외). ㉔